

정책연구용역 입찰 재공고(긴급)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의거 “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따른 기대효과”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□ 용역과제 개요

- 과 제 명 :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따른 기대효과
- 추정금액 : 금이천만원 내외(₩20,000,000 / VAT 포함)
 - *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
 - *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
- 연구기간 : 2023년 12월 중 (약 1개월간)
 - *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
- 연구내용 세부내역 : 제안요청서에 의함
-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

□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: 일반경쟁, 협상에 의한 계약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“국가계약법”)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(제656호, 2023.6.16.)” 적용

□ 입찰서 제출

○ 제출 서류

- “국가계약법”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제안서 1부
- 가격입찰서 1부(밀봉)
-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
-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“국가계약법”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 각 1부
 - *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
- 2022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(해당기관 양식)
- 확약서(연구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)
-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
-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

○ 제출 장소 :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

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

○ 제출기한 : '23.11.30(목) 18시까지

□ 참가자격

○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(자)

- “국가계약법”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(자)
- “국가계약법”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(자)
- 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’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[업종코드: 1169]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

□ 협상 및 낙찰자 선정

- “국가계약법” 시행령 제43조(협상에의한계약체결)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제656호, ‘23.6.16.)”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
 -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%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,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(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)
-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
- 선정기준(제안요청서 참고) : 연구수행능력, 제안내용의 적절성, 연구의 필요성,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

□ 입찰무효

- “국가계약법”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

□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-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, 용역계약일반(특수)조건, 청렴계약특수 조건, 제안서작성요령,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(계약예규 포함)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
-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
-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

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

-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(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)
-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(☎ 044-203-59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